

##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
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6조 제3항에 의거하여, 2018년 11월 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지허브(주)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8년 11월 6일부터 2018년 11월 12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2018년 10월 19일
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2(삼평동)  
에스케이가스(주) 대표이사 이 재 훈

명의개서대리인 KEB하나은행(舊 하나은행) 은행장 함 영 주